

##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명	② 법인 설립일
③ 사업연도	④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구분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총 지출금액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⑦ 차가감 계 (=⑤-⑥)					
기부금 배분지출액	⑧ 개인 직접 지원액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⑫ 차가감 계 (=⑧+⑨-⑩-⑪)					
적정 여부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	⑭(=⑫의 평균란 금액)			"⑬ ≤ ⑭"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 2. 기부금 모집 · 배분 및 법인 관리 · 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구분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기부금 수입 금액	⑮ 개인기부금					
	⑯ 법인기부금					
	⑰ 합 계 (=⑮+⑯)					
기부금 모집 · 배분 등 사용액	⑱ 기부금 모집 · 배분 사용액					
	⑲ 법인 관리 · 운영 사용액					
	⑳ 합 계 (=⑱+⑲)					
적정 여부	㉑(=⑰의 평균란 금액 × 10%)	㉒(=㉓의 평균란 금액)			"㉑ ≥ ㉒"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개별 법인(또는 단체)		기부금 배분지출액		
㉓ 법인(또는 단체)명	㉔ 사업자등록번호	㉕ 총액	㉖ 평균	㉗ 비율(=㉖/㉕)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㉗ ≤ 25%"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㉘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 있음 [ ] 없음
---------------------------------------	---------------

## 작성 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습니다.
2.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 (1)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지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3)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4)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총 지출금액 중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5)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6)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⑨ 비영리법인 등 지출액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30%}"의 금액(양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3. "2. 기부금 모집·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 (1) ⑱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 ⑲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3.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 (1) ㉓ 법인(또는 단체)명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배분한 개별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배분지출액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㉔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부금단체지정번호를 적습니다.
  - (3) ㉕ 총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총 기부금 배분지출액을 적습니다.
  - (3) ㉖ 평균 : "㉕ 총액란의 금액 / 5(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수)"의 금액을 적습니다.
5.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 (1) ㉚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기부금 배분지출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배분한 금액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